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

의안 번호 2007 - 제19호

제출연월일 2007. 2. 28. 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- 가.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이며, 기 지원되고 있는 생활체육 단체 및 사업 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의 목적기술(안 제1조)
- 나.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, 육성 의무 부여(안 제2조)
- 다.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규정(안 제3조)
-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기획담당관

라. 기 타

1) 조례(안)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(2006. 12. 8 ~ 12. 27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 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생활체육의 장려) 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사천시민의 건강 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 육성하여야 한다.
- 제3조(보조금의 지원) ①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
 - 2.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
 - 3.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
 - 4.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· 연구 ·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- 5.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
 - 6.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【국민체육진흥법】

- 제3조 (체육진홍시책 및 권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- 제8조 (지방체육의 진흥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<신설 1989·3·31>
 -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